

## 1. 신청사 인적사항

부스NO.

회 사 명	(국문)	대 표 자	(국문)
	(영문)		(영문)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국문) ( - )		
	(영문) ( - )		
담당자명	성 명	부 서	직 위
	직통번호	휴대폰	e-mail

## 2. 부스 참가비

구 분	신청수량	단 가(VAT 포함)	합 계	비 고
기본조립부스	1관 ( )부스		원	
	2관 ( )부스		원	
독립부스	1관 ( )부스		원	
	2관 ( )부스		원	

※ '원상복구 예치금'은 신청 부스 가격의 10%입니다. (2017.6.11까지 완납必)

※ 송금계좌번호 : 1005-000-049392(우리은행) / 예금주 : (사)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

## 3. 전기 용량 신청(독립부스 업체 필수 신청항목)

전기종류	신청수량	단 가(VAT별도)	합 계
단상 22V(60Hz)	( )KW	50,000/KW	원
삼상 220V(60Hz)	( )KW		원
삼상 380V(60Hz)	( )KW		원

## 4. 기타 부대시설 신청

전기종류	신청수량	단 가(VAT별도)	합 계
전화(국내전용)	( )대	70,000 원	원
전화(국제전화)	( )대	200,000 원	원
급배수	( )개소	200,000 원	원
압축공기	( )개소	200,000 원	원
인터넷 전용선(LAN)	( )회선	100,000 원	원

## 5. 주요 전시품목

No.	회사명(영문)	출품국	주요 전시 품목
1			
2			

상기와 같이 SICAF2017 조직위원회에 참가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고자 합니다.

2017. . . . .

계약담당자 : \_\_\_\_\_ (인)

대 표 자 : \_\_\_\_\_ (인)

본 계약서에 날인한 사람은 전시자(참가업체)를 대표하여 본 계약서를 이행할 권한과 의무가 부여되었음을 보장한다.

## 전시회 참가 규정

### 1) 제1조 (용어의 정의)

-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조합, 단체, 개인을 말한다.
- '전시회'라 함은 SICAF2017(The 21th Seoul International Cartoon & Animation Festival)를 말한다.
- '주최자'라 함은 (사)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 (이하 SICAF)를 말한다.

### 2) 제2조 (전시 부스 및 면적 배정)

- 전시자는 부스위치에 따라 개방면수가 다르므로 신청 시 개방면수를 확인해야하며 주최자는 신청접수 순, 전시품 성질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 전시자의 전시 부스 위치를 할당한다.
- 주최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회 개최일 25일전까지는 전시자에게 할당된 공간을 전시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이와 같은 변경에 대해 전시자는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최자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해야 하며,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3) 제3조 (참가 신청)

- 전시회 참가를 희망하는 회사는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인 (사)SICAF 조직위원회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전시자는 이미 제출한 참가신청서 등 기타 제출 서류의 내용에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미 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 제출한 참가신청서는 참가신청 계약의 의미를 가지며, 계약서로 준용한다.
- 신청-제공 가능한 공간 수량은 제한되어있으며, 신청 후 참가비 완납을 기준으로 주최 측과 협의 후 선정한다.
- 전시자는 참가신청서 제출 후 2017.6.11 (조기신청제외)까지 참가비를 완납 하여야 한다.

### 4) 제4조 (참가 비용)

- 참가비는 부스 임차비를 말하며, 관리비용(전기, 전화, 인터넷 전용선 사용료 등)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정산한다.
- 부스 임차비는 기본 1부스 (3X3m)를 기준으로 하되, 개최 공간에 따라 일정 및 참가비를 구분하여 산정한다.
- 기본조립부스는 섹터 1, 2관 동일하게 이백만원정(W2,000,000)/ 독립부스의 경우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정하나, 주최자와의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기본부스는 기본면적 3X3m이며, 기본 장비는 안테나스크 1개, 의자 1개, 조명 5개(스팟조명 3개, 암조명 2개)(1kw), 상호간판을 제공한다.
- 전시자가 참가비를 규정한 기간 내에 완납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자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5) 제5조 (티켓 관리)

- 행사기간 내, 전시자는 전시장의 출입이 자유로운 아이디카드 2장을 제공받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아이디의 경우, 전시자의 별도 요청이 있을 시에는 추가 발급이 가능하나, 별도의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 6) 제6조 (전시실 관리)

- 전시자는 전시기간 동안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에는 주최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입된 비용은 반환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전시자는 주최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상호간에 교환할 수 없다.
-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장,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못질 등 원상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주최자의 복구 요청 등에 따라 적절한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SETEC 대관 규약에 따름)
- 주최자는 질서유지와 안전관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의 예방 등을 위하여 전시품목, 전시행위 등을 선택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7) 제7조 (설치 및 철거)

- 설치 및 철거는 주최 측이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해야만 한다.
- 설치와 관계된 설치물의 고도제한, 설치물 소재에 대한 제한 규정 등 주최자가 정한 규정을 전시자는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에 위배되는 설치물에 대해 주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중지 또는 철거, 반출해야 한다.
- 전시자는 철거 시 설치에 따른 모든 장치물을 수거해야 하며 철거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 손상에 대하여 주최 측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 철거 시 부스 참여자는 설치 전 상태로 원상복구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주최 측은 부스 신청 시 신청한 부스 단가와 부대 시설 사용료를 합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원상복구 예치금'을 (2017. 6. 11. 완납) 주최 측에 납부한다. 예치금은 철거 후 주최 측이 대여 공간의 상태를 점검하고 문제없을 시 행사종료 후 30일 이내로 부스 참여업체에 반환한다. 원상복구 예치금 이상의 문제 발생 시 SETEC 대관 내규에 근거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 8) 제8조 (주최 측에 대한 정보제공)

- 전시자는 주최자가 부스 내 장치 및 활동이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품 및 전시장지 공사 시공에 관한 자료는 물론 전시회 홍보에 필요한 정보를 주최 측에 제공하여야 한다.

### 9) 제9조 (보안 및 안전)

- 주최자는 전시자 및 관람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계 조치를 강구 할 것이나, 전시자의 모든 물품에 관한 궁극적인 책임은 전시자가 부담한다.
- 스탠드 및 전시장치의 모든 자재는 소방 및 안전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하며, 주최자는 필요시 시공 작업 및 실연을 제한 할 수 있다.
- 전시자는 전시 스탠드 및 전시품의 도난 및 훼손 또는 여하한 종류의 개인상해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주최자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10) 제10조 (일부 사용 취소 및 위약금)

- 전시자가 신청한 전시 부스 일부의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사용취소 후 15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기납입 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 \* 전시개시일 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취소했을 경우 : 취소면적/신청면적 X 참가비(기본 부스비 포함) X 100%
  - \* 전시개시일 1개월 이전에 취소했을 경우 : 취소면적/신청면적 X 참가비(기본 부스비 포함) X 50%

### 11) 제11조 (해약 및 해약금)

- 전시자가 참가신청서 제출 후 참가를 포기할 경우 다음에 정해진 해약금 상당액을 참가 포기 후 5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기납입 된 참가비는 동 해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단, 반환금액에 대한 별도 이자를 지급하지는 않는다.
  - \* 전시개시일 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취소했을 경우 : 참가비(기본 부스비 포함)의 100%
  - \* 전시개시일 1개월 이전에 취소했을 경우 : 참가비(기본 부스비 포함)의 50%

### 12) 제12조 (전시회 취소 및 변경)

-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를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국가 위기 사항이나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인 경우 또는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 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13) 제13조 (보증규정)

-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증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 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14) 제14조 (분쟁해결)

-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 및 대한민국 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해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